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통신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증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 기획재정과를 폐지하면서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3.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제6조제12항제18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9호를 삭제한다.

18.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5호 및 제28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4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0.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4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항제10호, 제12호, 제17호, 제18호, 제2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32.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5.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항제1호 중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을 “하수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물 재이용 촉진·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9.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

항

21.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제10호 중 “조사·연구(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만 해당한다)”를 “조사·연구”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기획재정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을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대기·폐기물”을 “대기”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5의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⑤ 자원순환과장은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의5제1항 본문 중 “제10호 및 제11호”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제15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0호 및 제11호”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제15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31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별표 21의 정원 1명(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6 중 총계 “632”를 “633”으로 하고, 일반직계 “626”을 “627”로 하며,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6”을 “95”로 하고,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4”를 “35”로 하

며, 행정서기보 “1”을 “4”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2”를 “9”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통신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632”를 “6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7”로 하며,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5”를 “104”로 하고,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4”를 “35”로 하며, 행정서기보 “1”을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5”로 하며,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보건전문관·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7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0”을 각각 “401”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9”를 “1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4”를 “8”로 하고, 운전서기보 “7”을 “4”로 하며, 방호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3”을 “104”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7”을 “26”으로 한다.

별표 13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

을 “12”로 하고, 운전서기보 “12”를 “11”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4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을 “12”로 하고, 운전서기보 “11”을 “10”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6의2 중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6의3 중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7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 중 “방송통신서기 1명, 통신운영서기보”를 “방송통신서기”로, “3명으로”를 “4명으로”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

2. 제4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3. 제4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

4. 제4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
5. 제43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6. 제43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⑧ (생략)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부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⑪ (생략)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u><신설></u> <u><신설></u> 18. (생략)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u>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9. <u>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u> 20. (현행 제18호와 같음) ⑬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⑭ (생략)	⑭ (현행과 같음)	3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	<삭제>
⑮ 통합허가제도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3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삭제>
9. <u>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삭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⑯ ~ ⑳ (생략)	⑯ ~ ㉑ (현행과 같음)	33.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⑨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34. ~ 39. (생략)	34. ~ 39. (현행과 같음)
⑩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신설>	40. <u>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u>
1. <u>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u>	1. <u>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신설>	41. <u>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42. <u>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	5. <u>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40. (생략)	43. (현행 제40호와 같음)
6. ~ 24. (생략)	6. ~ 24. (현행과 같음)	⑪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25. <u>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u>	<삭제>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26.·27. (생략)	26.·27. (현행과 같음)	10. <u>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u>	<삭제>
28.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u>	<삭제>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29. <u>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삭제>	12. <u>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u>	<삭제>
30. <u>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u>	<삭제>	13. ~ 16. (생략)	13. ~ 16. (현행과 같음)

17. <u>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8. <u>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 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u>	<u><삭 제></u>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u>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25. <u>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6. <u>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 정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7. <u>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 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8. <u>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9. <u>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 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 한 사항</u>	<u><삭 제></u>
30. <u>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 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31.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u>

<u><신 설></u>	32. <u>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3. <u>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4. <u>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5. <u>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사항</u>
⑫ <u>삭 제</u>	⑬ ----- -----.
⑬ <u>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하수도</u> ----- -----
1. <u>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u>	2. · 3.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4. <u>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사항</u>
4. <u>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 관리</u>	5. ~ 7.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8.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u>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 관리기준 설정</u>	<u><삭 제></u>
9. <u>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u>	<u><삭 제></u>
10. <u>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 의 설정</u>	11.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2. <u>물 재이용 촉진·지원 및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u>
12. <u>중수도, 하수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물 재이용 촉진</u>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2	633	+1
일반직계	626	627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4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삭 제>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 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6	95	-1
	.	.	
	.	.	

· 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 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 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 서기 또는 <u>방송통신서기 1명,</u> <u>통신운영서기보 1명</u> 및 사무운 영서기보 3명으로 본다.	----- ----- ----- ----- <u>방송통신서기 1명</u> -- ----- ----- <u>4명으로</u> ---.
③ ~ ⑥ (생 략)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7에 따른 전문경력관 나군(통신 담 당) 1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전 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명으로 본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4</u>	<u>35</u>	+1
·	·	·	
·	·	·	
행정서기보	<u>1</u>	<u>4</u>	+3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u>12</u>	<u>9</u>	-3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통신 담당)	<신 설>	<u>1</u>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32</u>	<u>633</u>	+1
·	·	·	
·	·	·	
일반직 계	<u>626</u>	<u>627</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u>6</u>	+6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5</u>	<삭 제>	-5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 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05</u>	<u>104</u>	-1
·	·	·	

·	·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4</u>	<u>35</u>	+1
·	·	·	
·	·	·	
행정서기보	<u>1</u>	<u>4</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5</u>	-4
·	·	·	
<u>전문경력관</u> 가군(비상안전 담당)	<u><신 설></u>	<u>1</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00</u>	<u>401</u>	+1
일반직 계	<u>400</u>	<u>40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 ·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u>9</u>	<u>10</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u>4</u>	<u>8</u>	+4
운전서기보	<u>7</u>	<u>4</u>	-3
방호서기보	<u>3</u>	<u>2</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3</u>	<u>104</u>	+1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27</u>	<u>26</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10</u>	<u>12</u>	+2
·	·	·	
·	·	·	
운전서기보	<u>12</u>	<u>11</u>	-1
·	·	·	
·	·	·	
<u>전기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 · <u>10</u>	· · <u>12</u>	+2
· · 운전서기보	· · <u>11</u>	· · <u>10</u>	-1
· · <u>전기운영서기보</u>	· · <u>1</u>	· · <u><삭 제></u>	-1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 <u>4</u>	· · <u>5</u>	+1
· · 사무운영서기보	· · <u>3</u>	· · <u>2</u>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4</u>	<u>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u> <u>또는 환경서기보</u>	<u><신 설></u>	<u>1</u>	+ 1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